

한우고기전문판매점 및 브랜드가맹점 설치사업 지침보완

I.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

▶ 시책 및 추진방향

-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설치를 점차 확대
- 한우고기 냉장육 유통체계 확립

▶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 분	'93~'98년	'99년	2000년	2001년 (예산안)	2002~ 2004년
사업량	개소 582	66	90	100	
사업비	계 백만원 120,872	12,059	20,026	20,000	
	보조	-	-	-	
	용자	120,872	8,441	14,000	14,000
	지방비	-	-	-	
	자부담	-	3,618	6,026	6,000

* 2002년 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

▶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개요

(1) 사업내용

• 사업대상자

- 농협중앙회, 지역조합, 한우영농조합법인, 한우사육농가(전업농가)로서 한우고기전문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
- 기존의 식육판매업자가 한우고기전문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자
- 기타 한우고기전문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자
- 음식점(단, 육류를 전문적으로 조리·판매하는 일반음식점)과 겸업으로 한우고기전문판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

• 사업량 및 사업비 : 100개소, 14,000백만원

- 개소당 200백만원(용자70% 140백만원, 자담30% 60)

* 점포면적 10평(33.0m^2)이상이며, 30평(99.1m^2)이상 설치하는 경우 개소당 사업비 400백만원(용자280, 자담120) 가능

- 농협중앙회(축협유통)

- 점포면적 50평(165.2m²)이상 ~ 100평(330.5m²)미만
 - : 개소당 1,000백만원(용자70% 700백만원, 자담30% 300)
- 점포면적 100평(330.5m²)이상 : 개소당 1,500백만원
 - (용자70% 1,050백만원, 자담30% 450)
- 음식점 겸업 한우고기전문판매점
 - 음식점 면적은 식육판매장소를 포함하여 40평(132.2m²)이상
 - : 개소당 400백만원(용자70% 280백만원, 자담30% 120)
- 지원조건
 - 연리 : 5%(생산자단체, 생산농가) 및 8%(일반)
 - 3년거치 5년균분상환
- 지원내용(지원자금의 용도)
 - 식육판매점포(겸업 음식점 포함) 신규건축, 기존건물의 매입, 건물임차료(용자금의 50%이내)
 - 식육판매업소시설 : 냉장, 냉동, 가공, 판매(진열장), 포장, 인테리어시설, 운송차량,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(겸업 음식점의 경우), 기타부대시설 등
- 시설기준
 - 식육판매점포 면적 10평(33.0m²)이상
 - 식육판매진열장길이4m · 냉장숙성실2평 · 냉동실1평 · 냉장육절기1대 이상
 - 기타시설 :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[별표10]의 "6.축산물 판매업"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
 -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40평(132.2m²)이상(식육판매장소 포함)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- 사업자 준수사항
 - 한우고기전문판매점 및 겸업 음식점은 한우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(수입쇠고기, 육우고기, 젖소고기는 판매할 수 없음)하여야 하며 기타 축산물은 국내산만 판매
 - 한우고기는 부위별, 등급별(등심, 채끝)로 구분하여 판매
 - 축산물가공처리법, 축산법, 식품위생법(겸업 음식점의 경우)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 - 한우고기전문판매점 및 겸업 음식점은 거래증명내역(도축검사증명서,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 등)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- 한우고기전문판매점을 표시하는 간판 부착(붙임1 예시참조)
 -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주(종업원)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식육전문기관(농협 축산교육원 또는 대학 등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기관)에서

1주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(다만, 이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외)

- 사업자가 점포를 매도, 임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·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를 통하여 시·도지사에게 미리 알려야 함

나. 사업추진체계

- 사업 주관기관 :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
- 사업 담당부서
 - 농림부 : 축산물유통과
 - 시·도(시·군) : 축산업무담당과
- 사업시행절차
 - 시장·군수는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2001.3.15까지 시·도지사에게 보고
 - 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1.3.20까지 농림부에 보고

〈한우전문판매점 설치 우선순위〉

① 한우 관련 생산자 단체 : 농협중앙회(축협유통) > 지역조합 > 영농조합법인·협업체

② 한우사육농가(수소거세에 의한 고급육생산농가로서 사육규모가 큰 농가를 우선한다)

③ 기존 식육판매업소가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자

* 단, 동일한 순위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(품질인증)에 근거한 축산물품질인증 단체(또는 농가),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식육기술교육을 이수(농협 축산 교육원 또는 대학 등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)한자, 자기 소유점포를 소유한자는 우선한다.

- 농림부는 시·도별로 사업비와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·도에 통보하며 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또는 추가신청을 받아 적정한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한다.

- 시·도지사는 대상자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붙임2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번호, 업소명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.

-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, 계약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 (자가시공은 인정하지 않음)

- 융자금은 시·도지사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



다. 행정사항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자가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를 강구한다.
-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사업자가 판매부진 등에 따른 판매장을 이전 및 신체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정기간 판매점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경우 관할시·도지사는 판매장 휴업사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휴업기간을 정하여 지정서를 회수하고,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점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도록 농협중앙회에 통보한다.
- 시·도지사는 매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불임3서식에 의거 다음분기 15일까지 보고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한다.
(단, 겸업 음식점의 경우 별도 표시한다.)

라.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

- 2001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

II. 브랜드가맹점 육성

1. 목적

- 브랜드육의 판매망을 구축하여 국내산 브랜드육의 수입육과의 시장차별화
- 브랜드육의 품질향상과 위생수준 제고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브랜드업체의 가맹점설치 확대
- 브랜드가맹점 확대로 부분육·냉장육 유통활성화

3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 시책의 강구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- 브랜드가맹점 설치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 분	'99까지	2000	2001	2002
사 업 량	311개소	247	250	
사 업 비	42,969	49,400	50,000	
- 축 발기금	29,362	34,580	35,000	
(보조)	-	-	-	
(용자)	29,362	34,580	35,000	
- 지 방비	-	-	-	
- 자 부담(추정)	13,607	14,820	15,000	

* 2002년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

〈브랜드업체별 가맹점 설치기본계획(누계)〉

- 축산물종합처리장(농협중앙회, 한냉(주) 포함) : 대규모 개소당 350~400개소, 중규모 개소당 175~200개소
- 지역조합, 일반브랜드업체 : 개소당 10~40개소
※ 브랜드업체 여건에 따라 기본계획이상 설치 가능

5.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(1) 사업내용

- 사업대상자
 - 축산물(한우고기, 돼지고기)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업체로서 (축산물종합처리장, 지역축협, 일반브랜드업체)냉장육 생산가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영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당해 브랜드육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확보하고자 하는자 (품질인증업체 우선 선정)

직영판매장 및 가맹점에 음식점(단, 육류를 전문적으로 조리·판매하는 일반음식점)을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
- 사업량 및 사업비 : 250개소 50,000백만원(융자35,000, 자담15,000)
 - 가맹점 개소당 200백만원(융자70% 140백만원, 자담30% 60)
 - 음식점 겸업 가맹점 : 개소당 300백만원(융자70% 210백만원, 자담30% 90)

※ 가맹점의 여건에 따라 업체별 배정사업비 범위내에서 배정받은 물량이상으로 설치가능, 다만, 지원한도액(140백만원), 음식점 겸업 가맹점(210백만원)은 초과 할 수 없음.
 - 시도별 사업량 : 별도시달
- 지원조건 : 연리5%, 3년거치 5년균분상환
- 지원내용
 - 식육판매점포(겸업 음식점 포함)의 신규건축, 매입비, 임차료 (융자금의 50%범위내에서 지원)
 - 가맹점의 식육보관, 가공, 포장, 진열장, 인테리어, 운송차량,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(겸업 음식점의 경우) 등 시설비
- 시설기준
 - 식육판매점포면적 : 10평(33.0m²)이상을 기준으로 하되, 여건에 따라 축산물가공 처리법에서 권장하는 면적8평(26.4m²)을 적용할 수 있다.
 -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[별표10]의 "6. 축산물판매업"중

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

-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40평(132.2m²)이상(식육판매장소 포함)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• 사업자 준수사항

- 브랜드업체는 자체 육가공장에서 가공한 국내산 브랜드육을 등록된 자체상표를 부착하여 가맹점에 냉장육으로 공급하여 판매한다
- 가맹점 및 음식점 겸업 가맹점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브랜드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하여야 한다.
- 브랜드업체에서는 가맹점의 설치(인테리어, 간판 등)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.
- 축산물가공처리법, 축산법, 식품위생법(겸업 음식점의 경우)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브랜드가맹점 및 음식점 겸업 가맹점은 브랜드업체와의 거래증명내역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주(종업원)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식육전문기관(축협 식육교육센타 또는 대학 등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기관)에서 1주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(다만, 이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외)
- 가맹점을 매도, 임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거나, 휴업·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신고하고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브랜드업체가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.

나.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지사(시장, 군수)
- 사업담당부서
 - 농림부 : 축산물유통과
 - 시·도(시·군) : 축산업무담당과
- 사업시행절차
 - 시장·군수는 사업희망자로부터 브랜드가맹점 설치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2001.3.15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청
 - 시·도지사는 사업자별 브랜드가맹점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불임1 서식에 의거 2001.3.20까지 농림부에 보고
 - 농림부는 전년도 실적, 가맹점 설치목표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
-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대상자 모집 및 선정기준을 정하고 배정된 물량의 대상자를 선정
- 사업주관기관은 가맹점 설치대상자의 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, 자금대출기관에 신청하여 자금을 받도록 협조

다. 행정사항

-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축산물브랜드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제가 확대시행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를 강구한다
- 사업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은 브랜드업체로부터 대상자 변경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한다
- 브랜드업체는 가맹점설치 추진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시·도지사에게 매분기별로 보고하고, 시·도지사는 붙임 2 서식에 의거 다음분기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(단, 겸업 음식점의 경우 별도 표시)
-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브랜드 주체 관할 시·군에서 사업실적을 확인(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)하여 시·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(단, 겸업 음식점의 경우 별도 표시)
-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브랜드주체를 통하여 가맹점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조치하여야 함

6.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

- 2001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

